



Chemical Regulatory Compliance Provider

회사 개요



Chemical Regulatory Compliance Provider

CRCP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관련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규제대응에 있어
최상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서비스영역

- 화평법 신규물질등록 및 신고, 기존물질의 사전신고 및 등록
- 고분자화합물 면제확인, 중간체 면제확인
- 유럽 REACH 등록 및 BPR 대응
- 미국, 중국, 일본, 타이완, 호주 등 해외 물질등록/신고
- CAS 등록
- GHS/CLP(M)SDS 및 라벨링 작성
-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승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확인신고 자문
- 제품의 라벨 검토 및 작성
- 화학물질규제 대응 상시 자문 서비스
(화평법, 화관법, 산안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위생용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법)
- 공급망 내의 물질정보 확인/보증 서비스(TPR Service for Confidentiality)



국내화학물질 신고·등록·면제



화평법에서는 신규물질의 등록 뿐만 아니라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화관법에서도 화학물질(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확인명세서, 영업허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신규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위해·위험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 같은 다양한 등록 등의 의무에 대하여 CRCP는 다년간 물질등록을 수행한 전문인력과 다수의 사건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등록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응 서비스

- 인벤토리 작성
- 신규물질 등록 및 신고
- 기존물질 사전신고 및 등록
- 동일물질 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대리 수행
- 공급망간의 의사소통 지원
- 시험항목 검토 및 모니터링
- 등록자료 구매 협상 및 대행
- 해외 제조자의 대리인 서비스
- 화학물질 등록
- 신고 면제확인서 제출
- 중간체 면제확인, 고분자 면제확인
- 제품내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 산안법에 따른 위해위험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고분자화합물&중간체 특화 서비스

국가별로 고분자 및 중간체에 대해서 등록 의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분자와 중간체의 경우 국가별 특례조항을 적용할 경우 등록면제 또는 간편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CRCP는 국내외 업무 경험이 풍부한 고분자 및 중간체 대응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국내 화평법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고객사가 고분자 및 중간체 면제 또는 특례 적용을 받아 저비용으로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응 서비스

- 법령에서 정하는 고분자 또는 중간체의 정의 여부 확인
- 국내외 고분자 및 중간체 대응 전략 수립
- 국내외 고분자 및 중간체 특례 및 면제 해당 여부 확인
- 고분자 및 중간체 면제 신청
- 고분자 및 중간체 등록 신청
- 고분자화합물 총칭명 작성, 자료보호 및 정보보호 신청
- 잔류단량체 함량분석 대행





특례 조항을 활용한 등록 간소화

화평법에서는 천연유래물질, 법적용제외 물질, 유해성 낮은 물질에 대해서는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등록의무에서 제외되거나 등록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럽 REACH와 유사하지만 적용 범주가 다릅니다. CRCP는 국내 화평법 및 유럽 REACH 업무 경험을 토대로 국내외 고객사의 대상 물질이 특례 적용을 받아 등록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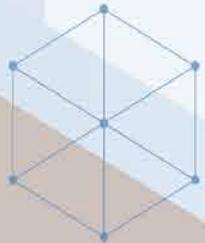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고시된 생활화학제품은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며,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등은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CRCP는 기존 유럽 BPR 대응 경험을 토대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을 제시합니다.

대응 서비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신고
- 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적합 검토
- 살생물질승인 신청
-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및 특례조항 적용 여부 확인
-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적합 검토
- 공급망간의 의사소통 지원
- 살생물질 시험항목 검토 및 모니터링
- 승인자료 구매 협상 및 대행
- 해외 제조자의 대리인 서비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보고자문
- 동일물질 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대리 수행

사업장안전보건대응업무

화학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화학물질 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수정되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으로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CRCP는 자체 전문인력과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에서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응 서비스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컨설팅
- 통계조사, 배출량 조사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 계획서 작성
-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자문



상시자문 서비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화평법, 화관법, 산안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생용품관리법,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제법령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 상당히 많은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하고, 전문인력을 보유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개정되고 제정되는 규제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CRCP는 고객사의 어려운점을 충분히 이해하여 고객사의 내부 담당자를 대신해 규제 전반에 대해 자문하는 상시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시자문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사는 법규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내부 인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어 기업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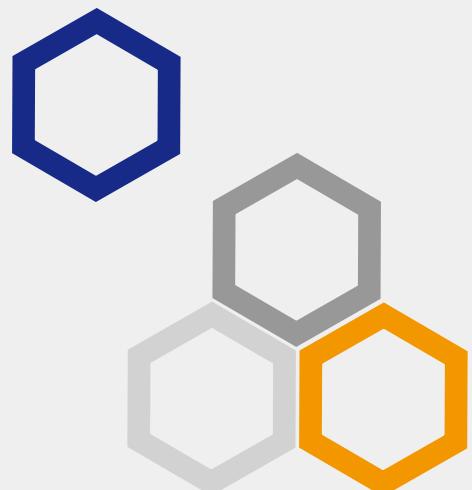
대응 서비스

- 인벤토리 작성
- 최신법령 개정 및 제정 동향 제공
- 화평법, 화관법, 산안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자문
- 위생용품관리법,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법 등의 자문
- 해외공급망과의 의사소통지원
- 물질등록 및 면제 등에 관한 자문
- 수입 및 관리 의무사항에 대한 상담
- 화평법 및 화관법 제도 교육
- 제품 라벨 및 표시 검토 및 자문
- 사내 화학물질 관리 체계 점검 및 자문
- 기업내 화학물질 대응 업무(의무사항) 현황 분석

TPR(Third-party Representative for Confidentiality)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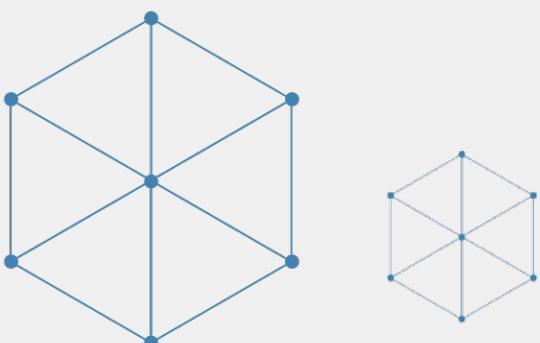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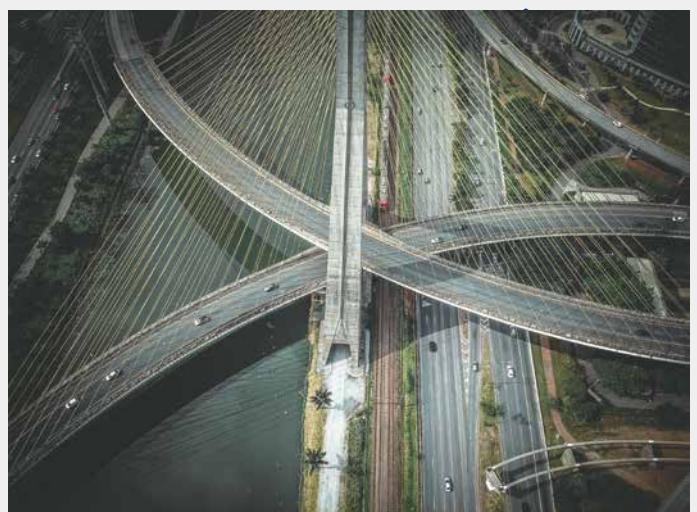
TPR 서비스의 필요성

1. 화학물질규제 제도 강화로 제품, 반제품 보다는 물질 조성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함
2.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으로 해당 제품의 특정유해물질의 포함여부 및 농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3. 규제대상 유해화학물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험분석을 통한 정보파악은 비 효율적이며 불가능한 상황임
4. 물질정보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법적규제 불이행으로 리스크가 커짐
5. 물질정보를 상호간에 확인시키지 못할 경우 거래 중단 가능성 높음
6. 상위공급자와 하위사용자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중개 역할 필요
(해당 규제설명, 필요한 정보 전달, 정보의 신뢰성 확보, 비밀유지 등)



대응 서비스

- 공급망과의 의사소통 대행 및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 비밀유지계약에 따른 정보 수령 및 관련 업무 수행
- 유해화학물질 여부 확인 및 확인서 발급
- 등록대상여부 확인 및 확인서 발급
- 물질정보 확인에 따른 규제 의무사항 대응 방향 자문



국외 화학물질 규제대응



Global Chemical Registration & Notification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로 인하여 보건 및 안전 환경 강화에 대한 국가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더불어 그 이면에 자국 산업 및 경제 보호를 위한 비관세 무역장벽의 일환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은 화학물질 등록규정을 신설,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CRCP는 EU REACH, 국내 화평법 등을 통해 물질 등록 및 위해성 평가 업무를 다년간 경험한 다수의 전문인력이 해당국가의 화학물질등록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화학물질 등록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 EU REACH에 따른 화학물질등록 및 관련 대응
- 미국 TSCA에 따른 PMN, SNUR 등등록 자문 및 대행
- 미국 CAS번호 등록
- 중국 신규화학물질신고(China REACH)
- 일본 화심법(CSCL) 및 안위법(ISSH)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 대만 유해화학물질관리법(TCSA)에 따른 신규 및 기존 화학물질 신고
- 캐나다 NDSL 등재를 위한 신규화학물질 신고
- 호주 NICNAS / 뉴질랜드 NZIoC 등록
- 필리핀 신규화학물질 신고(PMPIN)
- 태국 유해화학물질신고(Annex 5.6 Notification)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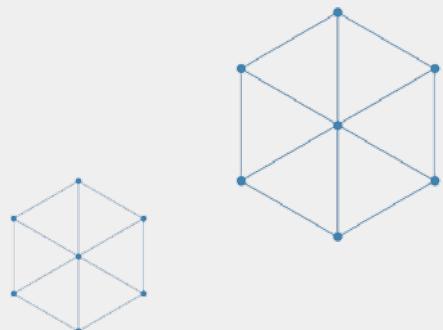
EU REACH 대응



CRCP는 유럽 현지에 CRCP Europe GmbH를 설립하여 유럽 화학물질규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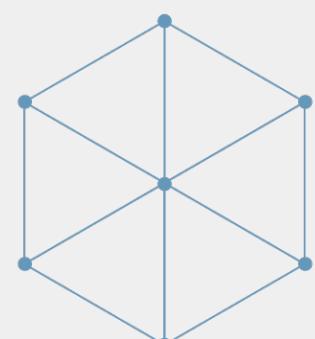
유럽 현지법인을 통하여 직접 EU REACH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빠르고 효율적으로 REACH 등록을 완료하여 고객사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REACH 대응 업무 이외에 국내 기업의 유럽 관련 needs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CRCP의 전문인력은 상당히 많은 물질에 대한 REACH 등록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다수의 물질에 대해 REACH 대표자등록을 완료하여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 REACH 최신동향 제공
- REACH Inquiry, 등록, 신고 및 허가
- 대상물질 확인 및 갭(gap) 분석
- SIEF 활동 및 자료공유(Data sharing)협상
- 공급망간의 의사소통 지원 및 Certi 발행
- 유럽 현지 시험항목 검토 및 모니터링
- EU CLP SDS(Safety Data Sheets) 작성
- 대표등록자(LR) 업무 수행
- 제 3자 대리인(TPR) 서비스
- 법률 자문 서비스



CRCP 핵심 경쟁력

고객사 전담제(1:1 맞춤)

CRCP는 고객사의 업무 특징에 따라 최적의 담당자를 선정하여 고객사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성공적인 등록, 신고 및 인허가 사례

CRCP는 국내외 중소기업, 대기업, 연구소, 대학교 등의 고객 업무를 대상으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사의 어떠한 요구 사항에도 완벽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비용 및 시간 절감 솔루션 제공

규제 법령상 면제조건, 제외조항, 등록 간소화 조항 등 특례 조건을 적용하여 규제 업무의 비용절감 및 시간 절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원스톱 시스템

CRCP는 전문인력에 의해 다양한 규제 업무가 원스톱으로 처리됨으로써 고객사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